

심의번호 :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03-002호(2023.03.07)

## KDB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이라 합니다)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에는 KDB 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됩니다.
- 이 예금을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며,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KDB 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대표상품

#### 2 거래 조건

	. н	
구 분		내 용
가	입 자 격	제한없음
상 품 유 형		정기예금
가 입 금 액		100만원 이상 원단위 가입 가능
계 약 기 간		• 1개월 이상 5년 이하 (월단위 또는 일단위)
		• 신규 : 영업점, 개인인터넷뱅킹, 기업인터넷뱅킹, 개인스마트폰뱅킹, 그 외 제휴채널(개인)
거	래 방 법	-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 및 제휴채널을 통한 가입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(이하 '근거계좌')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가능
		• 해지 : 영업점, 개인인터넷뱅킹, 기업인터넷뱅킹, 개인스마트폰뱅킹 - 근거계좌의 해지를 위하여는 이 예금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<b>적 용 이 율</b> ('23.03.00자 기준, 세전)		• 기본이율(세전) + 추가이율(세전) ※ 이율은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가입시점의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기본이율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*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* '홈페이지(www.kdb.co.kr) > 금융상품몰 > 페이지 하단 금리조회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	추가이율	• 별도 이벤트 진행시 이벤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이율 적용
		* 이벤트 진행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
이율적용방식		고정금리식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일시지급식 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 가능하며, 선택 후 변경 불가
		•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일 또는 그 이후에 이자를 일시 지급
		• 월이자지급식 : 매월 이자지급일(만기일 포함)에 이자를 지급
		* 이자지급일 : 가입일로부터 매월 해당일이며,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월의 말일,
		비영업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

구	분	내 용				
이자계산방법		• 만기일시지급식 : 입금금액× 적용이율× (가입일 ~ 만기일 전일) 일수 ÷ 365 • 월이자지급식 : 입금금액× 적용이율× {가입일(직전 이자지급일) ~ 이자지급일(만기일) 전일} 일수 ÷ 365				
계약해	지방법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•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•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,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				
	해지 시 기익	<ul> <li>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</li> <li>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</li> </ul>				
<ul> <li>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: 가입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</li> <li>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: 가입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차등하여 적용(단, 중도해지이율 가입일의 보통예금이율보다 작은 경우 보통예금이율을 적용)</li> </ul>						
		구 분	납입기간 경과비율 <sup>주1)</sup> 중도해지이율 <sup>주2)</sup>			
		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	- 연 0.1% <sup>주3)</sup>			
		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	~20% 미만 기본이율 <sup>주4)</sup> ×10%			
			20% 이상~ 40% 미만 기본이율×20%			
			40% 이상~ 60% 미만 기본이율×40%			
			60% 이상~ 80% 미만 기본이율×60%			
			80% 이상~100% 미만 기본이율×80%			
	지이율	12/ 32 41/11/22 2 1 2 24//12/11/11 13/2 1 2 24//				
('23.03.00자 기준, 세전)		주3) 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중도해지시 가입일 기준 보통예금 적용이율 적용 조4) 기부이용 : 시그가이의 다시 고시된 이 에그의 게양기가병 기부이용				
		주4) 기본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기본이율				
			기본0율×80% 기본0율×60%			
			기본0율×40%			
		٦١٣	フ1206年×20% 206年×10%			
			.VI≥^IV/0			

※ 위 그림은 기본이율, 납입기간 경과비율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

납입기간 경과비율

1개월 이상

40%이상

~60%미만

60%이상

~80%미만

80%이상

~100%미만

• 중도해지 전 이미 지급된 이자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원리금에서 차감

20%이상

~40%미만

~20%미만

연 0.1%

1개월 미만

구 분	내 용		
만기후 이율	경과기간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 이내 만기일 현재 고시된 일반정기예금(계약기간) 기본이율의 1/2 만기후 1년 초과 만기일 현재 고시된 보통예금 적용이율 ※ 해당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하여 이자 계산		
분 할 해 지	• 이자지급방식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경우에 한하여 2회(만기해지 제외) 가능 • 분할인출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하며, 분할인출 금액은 중도해지 기 준에 따라 처리됨		
상속, 양도, 명의변경	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		
담 보 제 공	가능		
기타사항	• 추가입금(회차식) 불가		
만기자동재예치	<ul> <li>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</li> <li>①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로 재예치되며, 적용이율을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직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</li> <li>② 월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</li> <li>③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됨</li> <li>설정가능횟수: 당초 계약기간 포함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재예치 횟수 지정</li> <li>* 재예치 제외사유</li> <li>① 법적지급제한, 지급 및 해지 제한이 있는 경우</li> <li>② 원금만 재예치로 신청 후 이자입금용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③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축소, 폐지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</li> <li>◆ 재예치일에 상품이 판매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</li> <li>* 재예치 금액: 원리금 또는 원금 중 선택 가능</li> <li>* 비과세종합저축 또는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원금만 재예치 가능</li> <li>* 조건변경</li> <li>① 재예치여부, 재예치횟수, 자동이체계좌, 재예치금액(원금 또는 원리금 중 선택)</li> <li>② 변경가능기간: 신규가입일부터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</li> <li>* 원금만 자동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비영업일이면 원금은 만기일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, 이자는 재예치 실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만기일의 전영업일에 지급함</li> </ul>		

구 분	내 용		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
휴면예금 및 출연	<ul> <li>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여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li> </ul>		
위법계약해지권	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
자료열람 요구권	<ul> <li>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수 있습니다.</li> <li>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 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
세제혜택	가능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

#### 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한국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시장상황,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상기 이율은 '23. 03. OO. 현재 기준이며,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**금리고정형 정기예금**은 금리하락기에 금리가 고정되어 이율 하락이 없으나, <mark>금리 상승기에도</mark> 이율 상승효과가 없어 변동금리형 상품 대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	고정금리	변동금리
	금리	금리
운 용 형 태	기간	7121
특 징	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일정주기(3/6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
장 점	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	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
단 점	<b>시장금리 상승기</b>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이 상품은 한국산업은행 수신기획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영업점, 고객상담센터** (1588-1500), 금융민원센터(02-787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d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을 하시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 〈부록〉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 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> <li>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
경과기간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